

의안번호	2217502
의 퇴 인	김영배의원
회 답 일	2026.7.22.
추계번호	26B146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의2 제3항·제4항·제5항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4항)<신설>	재량규정
		제3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의 운영 비용, 제4항에 따른 구매비용의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16조의2 제3항·제4항·제5항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¹⁾에 따른 장애인이 제2조제8호²⁾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하는 경

1)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런데 장애인 중 특별교통수단 구매 수요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은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

[참고자료] 특별교통수단 및 운전자 운영 현황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단위 : 인, 대)

구분	'24년말			'25년말		
	법정대수	운행대수	운전원 수	법정대수	운행대수	운전원 수
합계	4,750	4,896	5,523	4,715	5,073	5,861
서울	537	699	842	528	699	853
부산	305	222	201	301	232	232
대구	212	218	178	210	218	218
인천	254	256	256	255	276	276
광주	125	127	151	125	129	151
대전	130	111	128	130	116	136
울산	88	97	94	88	95	109
세종	24	29	34	24	33	41
경기	1,037	1,223	1,465	1,037	1,244	1,514
강원	228	243	290	226	263	318
충북	202	194	216	200	202	237
충남	269	233	220	272	250	267
전북	259	257	284	248	280	297
전남	293	230	280	288	250	330
경북	353	259	285	346	280	275
경남	367	430	516	371	437	529
제주	67	68	83	66	69	78

자료 : 국토교통부